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금 채무보증(안)

의안번호	124
------	-----

제출년월일 : 92. 6.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관내 거주 무주택 전세입주자중 저소득층 영세민의 담보능력 부재로 전세자금 융자금은
은행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 영세민을 위하여 구의 채무보증을 통한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채무보증목적 : 저소득층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지원

나. 채무보증내용

- 재 원 : 한국주택은행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금
- 융 자 금 액 : 534,000,000원(세대당 300만원)
- 보 증 기 관 :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
- 피보증기관 : 한국주택은행 괴정동 지점
- 보 증 기 간 : 한국주택은행의 채권이 변제 완료시까지
- 상 환 조 건 : 2년거치 일시상환(이율 연리 5%)

3. 관계법령

가.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나. 부산직할시사하구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 제1항

영세민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안)

1. 취 지

관내에 거주하는 세입자중 인상된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 영세민에게 지원해 주는 자금으로 영세민 전세자금 용자 대상 주민의 용자담보 능력 부재로 은행 대출이 곤란한 저소득층 영세민을 위하여 구의 채무(지급) 보증을 통한 전세자금을 용자 지원하고자 함.

<영세민 전세자금 용자 계획>

○용 자 금 액 : 534,000,000원

○용자한도액 : 가구당 300만원(178세대분)

○용 자 금 리 : 연 5% (신청자 부담)

○상 환 조 건 : 2년거치 일시 상환

(단, 전세재계약시 1회(2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

○우선순위결정 : 용자 대상자 선정 기준에 의거 시행

○용 자 은 행 : 한국주택은행 피정동 지점

○용 자 기 간 : 92. 7. 16-7. 31

○용 자 절 차

- 용자 대상자 신청서 거주지 등에 접수
- 동장은 사실조사후 적격자 구에 추천
- 구청장은 적격자 심사후 대상자 확정하여 동장 및 주택은행 피정동 지점에 통보
- 동장은 대상자에게 통지 주택은행에서 대출토록 안내

(보증인 1인 연대보증토록 안내)

○상 환 방 법

- 대출은행의 용자 조건에 의하여 상환
- 전세 계약시 가옥주, 세입자, 관할동장이 연기명으로 작성하되 전세금 반환시 가옥주가

용자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동장에게 반환 한다는 특약을 전세 계약서에 삽입하며, 동장은 반환된 금액을 즉시 한국주택은행 피정동 지점에 상환함.

2. 저소득층 영세민 전세자금 채무(지급) 보증 내용

가. 채무보증목적 : 영세민 전세자금 용자

나. 지급보증금액 : 금 534,000,000원

다. 지급보증기관 :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

라. 지급보증선 : 한국주택은행 피정동 지점

마. 지급보증기간 : 주택은행의 채권이 변제 완료시까지

바. 지급(채무) 보증 내용

○자 금 명 : 영세민 전세자금 용자금

○용자금액 : 534,000,000원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 상환

단, 전세 재계약자로 1회(2년) 연장 신청자에 한해서는 4년거치 일시 상환

○이 율 : 5%

• 상환재원 - 신청자 부담

• 사하구청장은 용자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 채무 부담

사. 근 거 : 지방재정법 10조 및 동법시행령 21조

아. 지급 보증 사유

영세민 전세자금 용자 대상 주민의 용자 담보능력 부재로 은행대출 곤란, 구의 지급 보증을 통한 용자 지원